

2021년도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

담당부서 : 아산시 문화관광과 (☎540-2087)
(재)아산문화재단 (☎534-2634)

『지방재정법』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(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지원대상 및 규모

공모 분야	보조사업명	지원규모 (단위:천원)
	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	27개 단체 내외

- 2021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단체별로 지원
※(아산시) 8개 단체 내외, 단체별 최대 2천만원,
(아산문화재단) 19개 단체 내외, 단체별 최대 5백만원

○ 지원대상 :

-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,단체
-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본부(지부)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

2. 지원제외대상

- 보조금 부정사업자로 통보받은 개인·단체
- 최근 5년 동안 도 및 시 보조금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·단체·법인(실적보고서 미제출,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미반납한 단체·법인)
- 비위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·단체·법인
-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문화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(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실적 필요)
-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
-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-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보조(기금 포함)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

3. 사업 선정기준

- 아산시 지방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·선정
-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, 효과성,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,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
4. 사업추진기간 : 2021. 3월 ~ 12월

5. 보조금 지원범위

- 법정운영비보조금외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(운영비 지원 불가)

6. 신청 및 제출서류

- 공모기간 : 2021. 2. 8. ~ 2021.2.26.
- 신청기간 : 2021. 2. 23. ~ 2021.2.26.
- 신청장소 : 아산시종합운동장 2층
- 접수처 : 문화관광과
-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
※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,
우편접수는 2021. 2. 26. 소인까지 유효

< 제출서류 >

- 지원신청서
- 단체소개서(정관·회칙, 회원명부 등)
- 사업추진계획서 ■ 민간단체등록증명서
- 최근 2년 이상 예술활동실적(별도서식 없음)

※ 서식은 다운로드 위치

- 아산시청 홈페이지(시정-시정공고-고시공고)
- 문화재단 홈페이지(커뮤니티-공지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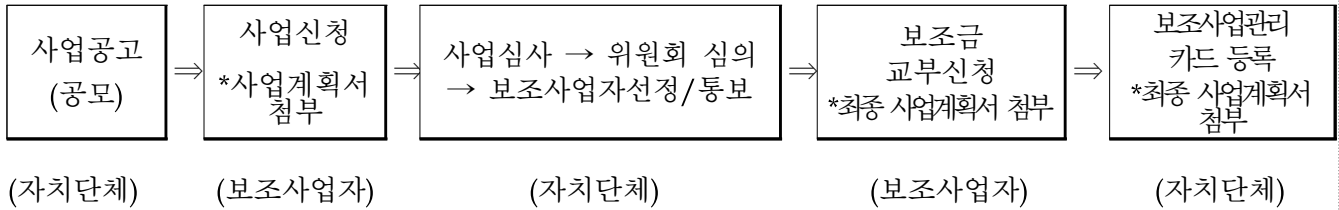
7. 심의 및 결과통보

- 아산시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선정
- 심의결과는 사업소관 부서에서 단체별 개별 통지

2021. 2. 8.

아 산 시 장

〈 유 의 사 항 〉

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기자본 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지방보조금 관리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(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)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

- 지방보조금의 용도의 사용금지
-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보조사업자는 아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

4.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코로나-19 단계별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 제출 필수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(분산 신청시 불인정)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문화관광과(☎540-208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